

# 올림픽 특수 마무리 건설업계 위기

도내 건설업계의 계약액과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건설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계약액은 2015년 대비 4,362억8,700만원(15.0%) 감소한 2조4,716억원에 그쳤다.

건설 계약액 감소는 올해 수주실적으로 직결된다. 지난해 계약액이 줄어들어 앞으로 도내 업체들의 실적 악화와 수주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관련 철도·도로 등 발주 끝나

계약액 4천억 줄은 2조4천억

공공공사 물량 4년만에 최저

공사물량·민간투자 확대 시급

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물량도 크게 줄었다. 올해 건설공사·설계용역 발주금

액은 3조3,775억원에 그치며 2013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예고됐다. 이처럼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와 철도·도로 등 각종 SOC사업 발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올림픽 관련 공사가 완료돼 향후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물량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업체 공사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수주는 향후 2~3년간 후퇴 국면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건설 관련 예산 확보, 분할발주, 적정공사 적용 등을 통해 건설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규제개혁과 발주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정동기 대성중·고 총동문회장 취임 원주 대성중·고 총동문회 윤한중(21회) 회장 이임식 및 정동기(23회) 회장 취임식이 지난 25일 원주 태장동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원주=오윤석기자

# 대형 주택공사 지역업체 참여 저조

올림픽 관련 잇단 공사 불구  
지난해 수주액 전년비 31%↓  
위장 직영·무면허 시공 원인

대형 주택공사가 강원도내에서 진행 중이지만 정작 지역업체 참여는 저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해 기성매출액과 공사계약 등을 분석한 결과, 토목 분야는 성장세인 반면 건축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다. 지난해 기성매출액은 2조8393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한 반면 계약은 2조4716억원으로 15% 감소했다. 특히 건축분야의 계약금액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건축 공사 수주액은 1조1934억원으로 전년보다 31.66% 감소했다. 원주혁신도시, 평창과 강릉에서 올림픽 관련 대규모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도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율 저조가 감소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택규제 강화, 위장 직영, 무면허 시공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토목 공사는 군부대 시설공사 등

의 영향으로 지난해 1조1523억원을 수주, 전년보다 9.47% 성장했다. 문제는 올해 건설공사 수주절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동계올림픽 공사 완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인철 회장은 "건설수주는 앞으로 2~3년간 후퇴 국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관련 예산 증액, 분할 발주, 적정 공사비 적용, 건축주 위장직영·무면허 시공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대 10년 → 7년’으로 줄인다

준공 후 최대 10년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주처들의 유지·보수 책임까지 하자담보 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공사에 떠넘겨 왔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정화 연구’를 마무리하고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고 10년이다. 일정 규모의 교량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와 터널구조부, 대형 공공건축물의 기둥·내력벽 등이 해당된다. 같은 교량 구조부라도 길이가 500m 미만이면 책임기간이 7년이다. 반면 방수, 도장, 미장 등 18개 전문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3년이다.

문제는 10년된 교량 콘크리트구조부의 도장까지도 일부 발주처들이 10년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담보기간이 1년인 도장을 10년간 보수해 달라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관행화돼 있다”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빌미로 발주처가 유지관리업무까지 시공사에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제도개선에 착수

했다. 이번 연구에는 건설기술연구원 주도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주요 구조부와 전문공종으로 명확히 나누고 기간도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발주처의 무분별한 하자담보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면책 사유를 보완하고 건축물처럼 제척기간을 신설했다.

## 주요구조부·전문공종으로 나눠 국토부, 연말까지 제도 손질 추진

## 발주처 무분별한 하자담보 요구 차단하기 위해 면책사유 보완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기준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는 5~7년으로, 전문공종은 1~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공종과 전문공사로 나뉜 현행 규정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도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 △불충분한 유지보수·운영 및 정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마모, 손상·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하면

발주처의 부당한 하자요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자발생 시점과 하자보수 청구시점 간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척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하자발생 기간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바꿨다.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연차별 산정기준도 도입한다.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은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고 인수시점부터 연차별 완공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산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댐, 플랜트, 소각로 등 최종 완공 이후에 목적물의 성능이 완성되는 구조물은 예외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보고서에서 빠졌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자책임기간은 동일해야 한다”며 “하나의 시설물이라는 관점에서 하도급자의 책임이 완료되는 기간에 원도급자의 책임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국민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보수를 뜻하기 때문에 사용단계에서 자연적인 성능 저하 등에 대해선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